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14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17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10월 15일, 이호대 의원외 13명

2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

(2020년 12월 17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호대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 상 잘못된 약어 사용을 바로잡고, 일부 문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여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개정 대상 조문을 어문 규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함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이호대 의원 등 14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14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최근 법제처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, 어문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,

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,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러운 말투, 어색한 번역 투 표현으로 가득한 법령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‘법령용어 순화사업’과 ‘법률 한글화 사업’ 및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’을 진행해 왔습니다.¹⁾
-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법적 간결성 및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,

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.

1) 법제처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제9판)」, 2019.12.

나.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 중 “기관에게”를 “기관에 대하여”로, 제3조 중 “교육감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로, 제5조 및 제8조 중 “단체에게”를 “단체에 대하여”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특히 안 제2조, 제5조 및 제8조와 관련하여 기관이나 단체는 무정명사이므로 “에게”를 쓰지 않고 “에”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,²⁾ 제3조의 “교육감”의 경우 비록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라 할지라도 교육감의 소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는바, 조례 정비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17, 2020.11.10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2) 법제처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제9판)」, 2019.12. p.64. 참고로 무정명사란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, 식물이나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말함. 반대어-유정명사.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기관에게”를 “기관에 대하여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교육감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단체에게”를 “단체에 대하여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단체에게”를 “단체에 대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표창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서울교육·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(“행사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<u>기관에게</u> 수여한다.</p>	<p>제2조(표창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관에 대하여</u> --.</p>
<p>제3조(표창의 종류)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, 창안상,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<u>교육감</u>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표창의 종류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
<p>제5조(공적상)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<u>단체에게</u> 수여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	<p>제5조(공적상) ----- ----- <u>단체에 대하여</u> 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협조상)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<u>단체에게</u> 수여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8조(협조상) ----- ----- <u>단체에 대하여</u> 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